
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2. 12. 01.)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내용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
소방안전관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전담: 해당없음 • 업무수행: 7종 • 업무대행: 감독적 직위 • 훈련결과 제출: 해당없음 • 교육방식: 집합 • 강습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급: 10일(80시간) - 1 급: 5일(40시간) - 2 급: 4일(32시간) • 실무교육: 이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업무전담: 특급, 1급 대상 검직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규 선임자는 선임일부터 적용 * 기존 선임자(1급→특급 변경대상 포함)는 2023.5.31.까지 검직가능 • 업무수행: 9종(업무기록*, 초기대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월 1회 작성·관리, 2년간 보관 • 업무대행: 감독적 직위+강습교육 수수료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급(1만5천㎡ 이상 및 아파트 제외), 2급, 3급 * 3개월 이내, 2일(16시간) 수수료 * 기한내 미수료시 미선임에 해당 • 훈련결과 제출: 특급, 1급(30일이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• 교육방식: 집합, 원격, 혼용 • 강습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급: 20일(160시간) - 1 급: 10일(80시간) - 2 급: 5일(40시간) • 실무교육: 실습·인증
소방안전관리 등급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급: 연면적 20만㎡ 이상 • 2 급: 간이SP설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급: 연면적 10만㎡ 이상 • 3 급: 간이SP설비
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선임 가능 • 자격증 발급: 수첩형 • 자격증 대여: 처벌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시행(자격증 일원화) • 자격증 발급: 수첩형, 상장형 • 자격증 대여: 형사처벌, 자격취소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연면적 15,000㎡ ↑, 연면적 5,000㎡ ↑(°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, °냉동·냉장 창고) * 자격(특·1·2·3급 중 1)+강습교육(3일 24시간) 수수료
불시 소방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화재취약시설* 불시 소방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 등

□ 참고사항

- 법령정보 검색 :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s://www.law.go.kr/>)
- 서대문소방서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(<https://fire.seoul.go.kr/seodaemun/>)
- 지면 관계상 주요내용을 상세히 담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소방서 예방과(검사지도팀 02-6981-5481, 위험물안전팀 02-6981-5492)로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